

4단계 BK21사업 미래사회를 위한 첨단원자력융합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제정 2021.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진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첨단원자력융합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인재양성사업의 본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경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 구성

제4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교육연구단장은 본 교육연구단을 총괄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추고 교육개혁의지와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최소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교육연구단장의 결의로 최종 의결 한다.

- 가. 교육연구단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교육연구단 예산 및 지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교육연구단의 자체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라. 참여교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사항
- 마. 교수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 바.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 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자.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차.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학부)와 동일한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참여 당시의 대학원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③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제7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7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의 중점연구분야와 전공이 부합하거나 기존의 5개 세부 연구팀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신임교원이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연구실적(최근 3년) 및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⑤ 연구년(1년 이상) 또는 교내 중요한 보직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휴학, 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대학원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별 실적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교육연구단장이 교수별 장학금 지원액을 차등 배정할 수 있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 중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하며,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B0(평균평점 3.0) 미만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11조(신진연구인력) ①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하며,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다.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나.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라.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 가.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 나.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다.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⑥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연구장학금) ① 지원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학기별, 분기별, 월별 지원 가능하다.

- 가.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 원 이상, 대학 규정 및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나. 입학 후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 후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 원 이상, 대학 규정 및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다. 입학 후 4년 이내의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 후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대학 규정 및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 학사경고자(학점 3.0 미만)에게는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합과정생의 경우 박사자격시험

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라. 예외적으로 사업 중간에 참여가 중지 될 경우(파견, 지도교수 변경 등) 참여 일수에 따라 월 70만원 미만의 금액이 일시적 지급 가능하다. 또한 실적 또는 연구 진행에 많은 소홀함이 판단될 경우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이 의결하여 최저 지급 금액보다 작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교육연구단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학생을 평가,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의 달성과 연구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에게 대학 장학금 지원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협력경비) ①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장단기 연수의 참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② 참여대학원생이 원자력분야 세계 유수대학, 연구소 및 해외우수기업에서 장기(15일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대학여비 규정을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참석을 위한 단기(15일 이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체제비, 학회등록비 등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대학여비 규정을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연수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대학원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 국제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참가일 최소 2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류

(1) 장단기 연수 신청서 1부

(2)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 1부

(3)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팸플릿(전체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또는 공동 연구 초청장 1부

(4) 항공권 INVOICE 1부(E-ticket 포함)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6) 국제학술대회 인정. 지원기준 실적 확인서 1부(미확정 자료 임시 제출)

⑥ 국제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참가 후 2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1) 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신분 및 출입국사실 확인 가능한 면) 1부

(3) 항공 탑승권 원본

(4) 추가 실비정산 (국내교통비, 현직교통비, 숙박비 등) 영수증 각 1부

(5) 국제학술대회 인정. 지원기준 실적 확인서 1부(학회 종료 후 확정된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⑦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생 선발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각 연구 분야에서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발한다.

제15조(해외학자 초빙 및 수당지급 기준) ① 해외석학은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가 있는 인사로서, 본

-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활용한다.
-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한다.
 -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④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해외학자의 초빙수당은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하여 주말 제외 후 1일 70만원 이내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자 계약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
 - ⑤ 해외학자에게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대학자체 규정에 따른다.
 - ⑥ 임용되지 않은 해외학자의 초빙수당 및 항공료, 체재비 등의 지급은 대학자체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해외유수대학에 재직하는 해외석학 및 해외 원자력산업계 CEO 급은 그 명성을 인정하여 체재비 추가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제16조(교육연구단운영비)** ① 교육연구단운영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단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등으로 구분된다.
 - ③ 참여교수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 ④ 교육연구단운영비는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7조(인센티브 지급기준)** ①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단소속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육연구단장이 참여인력의 연구업적과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의 인센티브는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매년 교육연구단장이 교육(학생지도), 연구(논문실적), 봉사(학과기여도)의 항목을 4:4:2의 비율로 산출하여 차등 지급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단소속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참여연구원 실적평가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④ 단, 참여교수는 1인당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신진연구인력 및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은 1인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부 칙 (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